

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1회 전문특수직 (감독, 기술트레이너)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1회 전문특수직(감독, 기술트레이너)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구분	직급(직위)	예정인원	채용방법		임용예정일
				1차	2차	
합 계		2명				2026.8.중
경력 공개경쟁	전문 특수직	탁구운영부 감독	1명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탁구운영부 기술 트레이너	1명			

□ 보 수 : 화성도시공사 관련규정에 의함(지원자의 해당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 전문특수직 감독 보수(세전) 상한액 금100,000천원 ~ 보수 하한액 63,000천원

※ 전문특수직 기술트레이너 보수(세전) 상한액 금70,000천원 ~ 보수 하한액 46,000천원

※ 복리후생, 기타 수당 등의 사항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 전문특수직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최초 계약기간 근무 후 지도자 평가 등 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 계약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야간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가능)

※ 임용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최대 1년)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관련분야 경력 등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 성실성·의지력, 의사발표, 기타발전가능성, 건강(정신·신체) 상태,
용모·예의·품행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 으로 평정 시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경력공채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조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임용 확정

라. 예비합격자 결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예비합격자는 최대 1명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7.16.\(목\) 10:00 ~ 2026.07.27.\(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주소창 입력 <https://hu.recruiter.co.kr/career/home> 또는 [바로가기](#) 클릭

다.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

원서접수		2026.07.16.(목) 10:00 ~ 2026.07.27.(월) 17:00
1차전형	서류심사	2026.07.28.(화)
	합격자 발표	2026.07.29.(수)
2차전형	면접전형	2026.07.3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6.08.04.(화)
임용예정		2026. 8. 중 ※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2) 경력 등 제출서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 3) 직종별 필수자격요건 자격 증빙서류(스포츠 지도사, 실적 및 경력증명서 등)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서류 미제출 및 암호화에 따른 열람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5)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다음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이내인 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인사규정(공통사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지도자 또는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공통사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자격요건 (직무분야 세부 자격요건 이면 참조)

구 분	직위	자 격 요 건
전 문 특수직	공동사항	○ 「공사 인사규정」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대한탁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또는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탁구 실업팀 감독 경력 3년 이상자
	기술트레이너	○ 대한탁구협회 탁구 선수 경력 8년 이상 경력자(필수)

※ 기간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마. 세부 자격요건(직무 관련분야, 자격)

구 분	관련 분야(관련경력 등)	관련 자격
전문특수직 (감독)	○ 탁구운영부 훈련 및 경기 총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필수자격] · 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 탁구 실업팀 감독 경력 3년 이상자
전문특수직 (기술트레이너)	○ 선수의 경기 지도 및 실적 관리 등	[필수자격] · 대한탁구협회 탁구 선수 경력 8년 이상자

4.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채용접수 사이트 동의
3	직무분야 자격증(직종별 해당자에 한함) ※ (감독)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에 한하며 필수 자격사항임 ※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4	지도자등록확인서(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 ※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스캔 파일 업로드
5	지도자실적증명서(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 ※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스캔 파일 업로드
6	선수등록확인서(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 ※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스캔 파일 업로드
7	선수실적증명서(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 ※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스캔 파일 업로드

8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일체(해당자에 한함) ※ 업무분야 등 세부내역 기재 필수,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제출서류 7) ※ 증명서 내 세부자격요건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내 단순 '감독' 또는 '트레이너' 기재 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 ※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스캔 파일 업로드
9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해당기간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서류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스캔 파일 업로드
10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 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스캔 파일 업로드
11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받은 스캔 파일 업로드

- ※ 임용등록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 ※ 관련 제출서류 등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제출서류8]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제출서류9]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사항으로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5. 채용서류의 반환 파기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 채용서류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6.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이내)의 경우에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 10%씩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7. 기타사항

-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시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제출서류 암호화에 따른 열람불가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u.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카.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
- 타.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1@hsuco.or.kr)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파.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1]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교육부(031-8012-7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기간 및 방법	· 기 간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방 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
유의사항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직종		업무직	시험구분	☐ 필기전형 ☐ 인적성전형
지원업무분야			출생월일	
성명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소		□□□□□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임신부 ☐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세기술>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문제지 (택1)	☐ 해당 없음 ☐ 확대문제지 (☐ 118% ☐ 150%) ☐ 축소문제지 (☐ 82%)		
	답안지 (택1)	☐ 해당 없음 ☐ 대필 ☐ 확대답안지 (☐ 118% ☐ 150%) ☐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험실	☐ 해당 없음 ☐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본인지참)	☐ 해당 없음 ☐ 보조기구 명칭() ☐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필요사항 :)		
	기타	☐ 해당 없음 ☐ 화장실 허용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